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의 재심개시결정에 관한

대법원 재항고 결정 관련 보도자료

• 대법원 1부는 2012. 10. 19.자 2009모1181 재항고사건(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개시결정 사건)에 관한 결정(주심 대법관 양창수)에서, 재심대상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이러한 허위의 증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다만,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새로운 증거들, 특히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고 재심청구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의뢰 결과는, 전대협노트 등의 발견 및 보관경위를 둘러싼 한송흙의 진술내용에 여러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가능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대협 노트 등이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예단의 영향 아래 대부분의 감정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 그러한 예단이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나 그 정도 등을 가려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리 그 감정결과에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위의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는 한편, 다만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재심을 개시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본 결정은, 필적감정에서 감정인이 감정대상문서의 작성자를 심리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감정에 임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감정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거나 간과할 수 없으므로, 감정인이 위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감정을 하였음이 밝혀지거나 이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 그러한 예단이 감정결과에 미친 영향의 유무나 정도를 가려본 후 그 신빙성 유무 내지 증거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밝힘과 아울러 전대협노트 등의 필적이 김기설의 것이라고 본 예단이 감정결과에 미친 영향의 유무나 정도를 살펴보지 아니한 채 진실화해위원회의 감정의뢰결과가 종전의 국과수(김형영) 감정결과보다 현저히 우월한 증거가치가 있다고 단정한 원심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향후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심급의 재심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재심청구인은 유·무죄에 관하여 새로이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I. 사안과 쟁점

가. 사안의 개요

○ 재심청구대상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 ▶ 김기설이 1991. 5. 8.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5층 옥상에서 전신에 시너 1통을 뿌리고 불을 붙인 후 약 16.5m 아래 지상으로 뛰어내려 병원으로 후송도중 사망하였는데, 재심청구인(→피고인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 2장을 대신 작성해 주어 김기설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 재심청구대상사건 소송의 경과

- ▶ 제1심: 자살방조죄와 국가보안법위반죄(이적단체 가입 및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하여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서울형사지법 1991. 12. 20. 선고 91고합1126, 1328(병합) 판결)
- ▶ 제2심: 파기자판(누범 가중 법령 적용 오류 시정) →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 6월 선고(서울고법 1992. 4. 20. 선고 92노401 판결)
- ▶ 상고심: 상고기각(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도1148 판결) → 1994. 8. 17. 재심청구인에 대한 형 집행 종료

○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상규명결정

- ▶ 2006. 4. 13. 재심청구인의 진실규명신청 ⇨ 2006. 4. 25. 조사개시 의결 ⇨ 2007. 11. 19. 진실규명결정

○ 재심개시결정(→원심결정)

- ▶ 서울고등법원 2009. 9. 15.자 2008재노20 결정 :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
- ▶ 재항고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가 재심사유의 부존재를 주장하며 재항고 제기

나.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재심대상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되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문서감정인들의 '필적감정절차에서의 공동심의'에 관한 진술이 허위의 증언으로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정해진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그리고 김기설의 필적이라며 제출된 전대협노트와 재심청구인의 필적문서 등에 대한 새로운 감정결과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5호에 정해진 '무죄를 인정하기에 명백한 새로 발견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II. 결정의 요지

- 대법원 1부는, 재심대상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되었고, 이러한 허위의 증언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위증죄의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에 대해 재심을 개시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 다만, 대법원은, 재심청구인이 재심사유로 내세우는 새로운 증거들, 특히 '유서가 김기설의 필적과 동일하고 재심청구인의 필적으로 볼 수 없다'는 진실화해위원회 감정의뢰결과는, 전대협노트 등의 발견 및 보관경위를 둘러싼 한송흙의 진술내용에 여러 의문점들이 남아있고 가능한 조사·자료에 의하여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 충분히 확인되거나 객관적으로 뒷받침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대협 노트 등이 김기설의 필적이라는 예단의 영향 아래 대부분의 감정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 그러한 예단이 감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나 그 정도 등을 가려보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불리 그 감정결과에 신빙성을 부여하거나 증거가치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와 달리 위의 새로운 증거자료들이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판시하는 한편, 다만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재심을 개시한 원심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III. 본 결정의 의의

- 이번 대법원 결정은, 이른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에 대하여 종전 확정판결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소속 문서감정인들의 공동심의에 관한 증언 내용 중 일부가 허위임이 증명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개시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판결한 결정이다.
- 대법원은, 새로 발견된 증거 및 이와 밀접하게 관련·모순되는 종전의 증거들을 함께 비교·평가한 결과는, 단순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거나 이를 탄핵하는 증거들이 법관의 자유심증에 따른 판단 범위 내에서 그 증명력의 우열을 다투는 정도를 넘어서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확정판결의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정도를 넘어 확정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실제적 진실의 발견에 의한 무고한 사람의 구제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이를 통한 정의의 구현이라는 형사사법의 이념에 반할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라야 비로소 재심이 개시될 수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 또한 필적감정에서 감정인이 감정대상문서의 작성자를 심리적으로 미리 결정하고 감정에 임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감정결과에 미칠 가능성을 쉽사리 배제하거나 간과할 수 없으므로, 감정인이 위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감정을 하였음이 밝혀지거나 이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도 그러한 예단이 감정결과에 미친 영향의 유무나 정도를 가려본 후 그 신빙성 유무 내지 증거가치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는 지침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이번 결정으로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었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심급의 재심소송절차가 진행됨으로써 재심청구인은 유·무죄에 관하여 새로이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끝>